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438호 2024. 4. 8.(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94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02호(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03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1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6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4.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읍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
- 2024년 연수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안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연수구청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05 ~ 2024. 04. 30(26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차 명	운행정지 요청일자	사 용 본 거 지	운행정지 사 유
61조7599	조**	Passat 2.0 TDI	2024.03.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26버7714	이**	스팅어	2024.03.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63거7208	비**	Lincoln Aviator 3.0 PHEV	2024.03.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49소3431	비**	BMW X5 xDrive40i	2024.03.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06거9647	비**	BMW i3 120Ah SOL plus	2024.03.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9우6133	비**	MINI Cooper D	2024.03.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1가7574	비**	BMW 730Ld xDrive WLTP	2024.03.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34버1137	비**	BMW 520i M Sport Package	2024.03.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10주9136	비**	A7 50 TDI quattro	2024.03.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06나2855	비**	BMW 320i	2024.03.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24도8883	비**	BMW M4 Competition M xDrive	2024.03.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5라8453	공**	그랜저(GRANDEUR)	2024.03.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는 동법 제82조(벌칙)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동법 제8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749-88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749-86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4.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31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 복지시설	연수구 선학동 231번지 일원	-	증)4,000	4,000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 선학동 231번지 일원 - 면적 : 4,000㎡ 증) 4,000㎡	·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신설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749-8652)

4.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의 적합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신설
- 제11조(모바일공무원증 발급 근거마련),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제14조제5항(현행법 적용) 개정
- 제14조 기존 사항 중 불필요한 부분(자녀돌봄휴가 및 부모휴가) 일부 삭제
- 별표4(유사경력별 연가 가산일수),
별표5(다자녀 출산의 경우 및 현행법 적용)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총무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전화 : 749-7165, FAX : 749-7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2시간미만”을 “2시간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본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제10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제6조(비밀 엄수) ----- ----- 다 른 사람----- -----. ----- -.
제11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생략)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이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 5년 미만----- ----- ----- - 별표 4-----.
<신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의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제14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생 략)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2시간 미만-----

-----.

2. (현행과 같음)

3. -----

----- 본다-----

② ~ ③ (생 략)

④ 영 제7조의7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부모 각각에 부여하며, 사용 시 신청자는 가정통신문, 학교의 공식 행사 증명서류,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 ⑧ (생 략)

⑨ 만4세 이하(매년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 ~ ⑦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과 같음)

<삭 제>

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생 략)

⑧ (현행 제10항과 같음)